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공개, 회의록작성 · 공개 현황 조사

“방대한 심사분야에 비해 전문성 부족한 위원 구성,
논의과정도 불투명해 공정한 심사 기대하기 어려워”

배경 및 취지	3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조직구성	6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6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구성	7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과 평가	9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및 구성 현황	9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1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와의 비교	13
개선방안	14
이해충돌방지 규정 현황과 평가	16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현황과 문제점	16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와의 비교	16
개선방안	18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공개 및 회의록작성 현황과 평가	19
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 및 현황과 문제점	19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규정 및 현황과 문제점	20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와의 비교	23
개선방안	28
[참고1] 규제개혁위원회와 주요 정부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회의 운영 현황 비교	29
[참고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	31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2015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로,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37개, 자문위원회가 512개임¹.
 -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로 무소속기관 성격(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성격(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성격의 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그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로 구분됨.
- 이러한 정부위원회는 개방성, 수평성, 합의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여, 기존의 정부 관료조직이 갖는 폐쇄성, 계층성, 독단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².
-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의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편향적으로 구성되거나 그 활동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서, 또는 결정 내용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비판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또 경찰위원회나 최근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적지 않음.
- 이 중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거나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필요한 규제까지 폐지하고 완화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됨.
 -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됨.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노후선박연령의 규제나 여객선 엔진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갑판의 화물을 고정장치로 단단히 묶도록 한 것으로 사각뿔줄로 묶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이 외에도 지하철과 철도의 수명제한 규제가 철폐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철폐됨.

1 행정자치부(2015), 『2015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중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참고

2 윤태범(2012),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중 참고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권 출범부터 규제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하며 규제완화 기조를 강조해왔고, 2014년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명시하며 산업별 규제완화 방향을 명시한 바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상 ‘권고’ 사항에 불과함에도, 실제로는 정부입법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고 있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심사의 효력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³.
-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닌 예외적인 문제보다 정부위원회의 일반적인 요건들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는 취지에서, 위원 구성의 적정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문제,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함.
 -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10월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사학의 자율권 침해 문제 등을 감안” 하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요청에도 또다시 철회를 권고함.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자 15인 중 8인의 위원이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됨⁴.
 -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9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분리공시제)’를 제정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말기 유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요한 사항을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함. 당시 회의에 참석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에스케이이텔레콤의 임원 경력을 가진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됨⁵.
-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단순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결정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이에 지난 7월에는 첫 번째 분석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선정하여 회의공개 및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등 회의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행하였으며⁶, 두 번째 분석대상으

3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제출되기도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어 이후 입법절차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제89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함(김상조,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올바른 규제개혁? 규개위부터 개혁하라」, 2014.10.15. <http://bit.ly/1PphPnB>).

4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2012.10.23. <http://bit.ly/1R5VVTt>

5 한겨레, “이통사 임원 출신이 ‘단통법’ 심사를...”, 2014.11.9. <http://bit.ly/1IPFXI8>

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회의 방청 여부,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살펴보았음.

6 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015.7.9. <http://bit.ly/1P8MzZy>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조직구성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1998.2.28.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⁷.
- 규제심사는 정부 입법절차 과정의 한 단계로, 정부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절차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동법 제 16조).
- 규제심사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의 정비’로 구분함.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청회나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함(동법 제7조, 제9조, 제 10조).
-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 즉 “중요규제” 인지를 결정하고(예비심사), 중요규제로 인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함(동법 제 12조)⁸.

7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8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긴급규제로 인정이 될 경우 규제개혁위

-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제14조).

2) 기존 규제의 정비

-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중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제출된 의견이 없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제18조).

3) 기타 심의·조정 기능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 외에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짐(동법 제24조).

2.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구성

-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봄(동법 제28조).
- 분과위원회는 경제분과와 행정사회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소관부처 규제 중 중요규제로 인정된 규제를 심사함(〈표1〉 참조). 이 중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안건의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함.
-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표1〉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소관부처(2015.11.09.기준)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소관부처
-------	------	------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제를 심사해야 함(동법 제13조).

경제분과	6인의 민간위원 4인의 당연직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특허청, 행복도시건설청 (19개 기관)
행정사회분과	8인의 민간위원 4인의 당연직 정부위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환경부 (24개 기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과 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정이 타당성과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심사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균형적인 위원 구성이 필요함. 이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들의 자격 문제 등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1.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및 구성 현황

1)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됨.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을 모두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임.
- 민간위원 자격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자격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수직에 있었던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사회단체 또는 경제단체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자’, ‘1급 이상 공무원직을 수행했던 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5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음.
- 위원 중 공무원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됨(제18조 제5호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현황

- 현재(2014.11.1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은 <표2>와 같음.

<표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위원 명단⁹⁾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서동원(위원장)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민간위원 (14)	경제분과 (6)	김종일(위원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원장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경희	한경희 생활과학 대표이사

9 규제정보포털에서 2015.11.12. 최종 검색 <http://bit.ly/1Lp2VLb>

	행정사회분과 (8)	전의찬(위원장)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 교수
		김태운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원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병준	매일경제논설실장
정부위원 (6)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위원 임명 절차의 문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에서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해 청와대에 제출하면 신원조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¹⁰. 후보자 선정 과정이나 후보자 경력 등에 대해서는 최종임명 전까지 공개되지 않음.
-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많은 위원회들이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각계나 분야별로 위원 추천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사실상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임. 이렇다 보니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위원들이 편향적으로 구성되고, 절차 또한 투명하지 않아 위원 후보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위원 전문성 부족

-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계나 분야별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위원 자격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떨어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열린 2013년 2월 28일 제 301회 전체회의부터 2015년 10월 30일 제 356회 전체회의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제들을 살펴보면, 총 16개의 중앙행정기

10 한겨레, “대통령이 임명…위원 선정기준·절차 불투명”, 2014.11.09. <http://bit.ly/15a9zTu>

관과 4개의 행정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80건의 안건에 대해, 113건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가 심사를 거쳤음(<표3> 참조).

- 안건의 내용들은 조세, 금융, 교육, 건설, 문화, 방송통신, 노동, 복지, 안전 등 사회 각 분야를 두루 포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복지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법(공정위) 등 각 기관의 주요 법령과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음.

<표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된 안건 및 규제 현황¹¹

소관 부처		안건 수	안건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규정)	규제 수
중앙행정기관 (15)	기획재정부	3	관세법, 담배사업법, 외국환거래법	3
	교육부	5	고등교육법, 사학연금법, 학점인정법 등	6
	미래창조과학부	3	단말기유통법 관련 기준, 방송법 등	5
	법무부	2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7
	행정자치부	1	기부금품사용법	1
	문화체육관광부	4	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4
	산업통상자원부	3	석유사업법 등	4
	보건복지부	5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등	5
	환경부	5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법 등	11
	고용노동부	6	건설근로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
	국토교통부	11	택시발전법, 부동산개발업법,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택법 등	18
	국민안전처	2	소방시설법 등	3
	식품의약품안전처	3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5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기본법	1
행정위원회 (4)	금융위원회	13	대부업법, 보험법, 외부감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22
	방송통신위원회	5	단말기 지원금 공시(분리공시) 세부기준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등	6
	국민권익위원회	2	부정청탁금지법 등	4
	공정거래위원회	3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자본시장법 등	3
그 외(1)	국무조정실	2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등	2
총 계		80		113

-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 전공자 출신으로 채워져 있음. 단순히 효율성 논리로 따질 수 없는 행정사회분과에도 경제 분야 출신의 민간위원이 다수 포진함. 반면 국민 다수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복지, 노동, 환경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의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떨어짐.

11 규제정보포털에 게시된 전체회의 회의록 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제301회~제356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조사함.

3.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와의 비교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 개선에 참고하는 취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비교적 규정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판단한 정부위원회를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을 각 부(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한 점, 위원 후보를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받도록 한 점 등이 참고할 만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국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점, 위원 자격에 구체적인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고루 포함되도록 한 점 등이 참고할 만함.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
 -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됨.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위원 후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됨.
-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며,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함.
- 위원의 자격은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개선방안

- 박근혜 정부 시기 심사 안전만 살펴보다라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행정부처의 중요 규제를 다양하게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편향된 전문성으로 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따라서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각계나 분야의 추천권을 보장해야 함. 현재는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전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는 개별 규제에 대한 공정한 심사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처럼, 국회 등의 기관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위원 구성의 균형을 맞추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민주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또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나 분야의 인사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해야 함.

이해충돌방지 규정 현황과 평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심사하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 외 다른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시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1. 이해충돌방지 규정 현황과 문제점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으나, 그 세부 규정은 내부규칙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은 관련 안건에 대해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3.5.24. 신설)

2.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비교

- 규제개혁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개선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다고 판단한 정부위원회를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의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반인이 공정한 심사를 해칠 것으로 보이는 특정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참고할 만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의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제척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참고할 만함.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친족의 범위를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도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심의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외부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연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

- 이해충돌방지 규정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위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위원회 직권으로 당사자의 제척을 결정할 수 있

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3. 개선 방안

- 심사과정에서 위원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원의 직무수행이나 기타 이해관계에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하거나 제척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비교한 두 위원회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심사 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위원 본인 뿐 아니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에게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공개 및 회의록작성 현황과 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각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개별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어야 함. 이에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작성 수준 및 공개 시점 등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 및 문제점

1) 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의는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위원장 판단 하에 위원회 의결을 받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비공개로 하는 구체적인 안건 등을 명시해놓고 있지 않음.
- 일반시민의 회의 방청 방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회의 공개 및 방청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총괄정책관에 전체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위원회 의결 사항” 이므로 방청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함.
- 회의 공개 여부는 “공익보호” 라는 규정상 사유에 의거하여 위원장 재량으로 판단함.

2.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규정 및 문제점

1.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작성·보관을 명시하고 있을 뿐 작성의 방법이나 공개 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2. 회의록 작성 현황과 문제점

- 안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주요발언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 발언내용은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위원장’, ‘○○○위원’, ‘국토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함.

<표4> 2015년 4월 10일 개최한 제34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¹²

②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규정 7-51조 제1항 제5호)

☐ 실손의료보험 순보험요율의 변경폭이 참조순보험요율 변경폭보다 더 높게 변경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

○ 다만 순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 연도에 인하여 적용하는 경우 제외하고,

○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 5%만 적용하도록 규정

☐ 주요발언

○ (○○○위원)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경향을 보이며, 일부 보험회사가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있으며,

- 보험사가 수취하는 ‘사업비’는 손해율 개념에서 배제되어 있어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고정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할 필요성 인정됨

○ (○○○위원) 다만 참조순보험료를 극히 일부 또는 상당히 상회하는 경우 모두 인상분의 정률을 인하토록 하여, 형평성의 문제 소지 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있음

- 평균치를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고, 해당 구간별 삭감비율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최종 인상률을 산출하는 것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심의결과 : 개선권고

○ 최고 인상 제한율은 개정안대로 하되, 평균치를 벗어나는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 인상 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참조순보험료를 초과비율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구간별로 차등화된 인상 제한율을 정하도록 개선권고함

- 예외적으로 발언자의 실명을 표시한 경우도 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2013.2.28. 개최 제301회 ~ 2015.10.30. 개최 제356회) 중 1회(제321회)에 불과함(<표 5> 참조).

<표5> 2014년 2월 7일 개최한 제321회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일부¹³

○ (이병진 위원) 자격·경력·학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법령 위임 근거가 없으며, 세 요소(자격·경력·학력)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하게 되면 3가지 요소 모두 필요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과도한 규제가 될 것 같은데, 유사입법례는 있는지

⇒ (국토부) 승급경로를 열어주어 상위기술자를 육성·확보하려는 것으로 기술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세부 기준을 잘 조정하여 해결해 갈 것임

○ (김태준 위원) 건설기술자·품질·건설사업관리 세 분야를 일원화 했는데 점수기준을 다시 나누어 설정하였는지

⇒ (국토부) 등급부여를 위한 자격·경력·학력 기준은 단일화하고, 분야별 점수기준만 달리하여 분야에 맞게 설정한 것임

○ (김용담 위원장) 동 제도의 연혁을 보면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Two track 체계로 이어오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부처 정책 결정의 문제이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듯

☞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나 법 체계상 형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형 일몰 2년을 권고함

3. 회의록 공개 현황과 문제점

- 회의록은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시점은 정해져있지 않음.
-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도 있으며(제341회, 제342회 회의), 회의개최 후 한 달이 지난 뒤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표6> 참조).

<표6> 규제개혁위원회 2015년 전체회의 회의록 게시 현황¹⁴

회의록(회의일자)	게시일
제354회 규제개혁위원회(15.9.18) 회의록	2015-10-02
제353회 규제개혁위원회(15.9.4) 회의록	2015-10-02
제352회 규제개혁위원회(15.8.27) 회의록	2015-09-11
제351회 규제개혁위원회(15.7.24) 회의록	2015-09-11
제350회 규제개혁위원회(15.7.10) 회의록	2015-07-27
제349회 규제개혁위원회(15.6.26) 회의록	2015-07-17
제348회 규제개혁위원회(15.6.12) 회의록	2015-06-29
제347회 규제개혁위원회(15.5.22) 회의록	2015-06-11
제346회 규제개혁위원회(15.5.8) 회의록	2015-06-11
제345회 규제개혁위원회(15.4.10) 회의록	2015-04-28
제344회 규제개혁위원회(15.3.27) 개최결과	2015-04-28
제343회 규제개혁위원회(15.3.13) 회의록	2015-04-08
제340회 규제개혁위원회(15.1.9) 개최결과	2015-01-28

13 규제정보포털에서 2015.11.12. 최종검색 <http://bit.ly/liC3RAf>

14 규제정보포털에서 2015.11.12. 최종검색 <http://bit.ly/1OrTOF9>

3.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와의 비교

-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는 데 참고하는 취지에서,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한 정부위원회를 선정하여 소개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방청절차를 명시하여 시민 방청을 보장하고 있는 점, 회의록 뿐 아니라 속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속기록은 회의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한 점 등이 참고할 만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청절차를 명시하여 시민 방청을 보장하고 있는 점, 회의록을 속기록에 가까운 형태로 발언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고할 만함.

1) 원자력안전위원회

- 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칙 제13조의2는 회의 방청 절차를 규정하며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신설)

2013.8.16.)

제13조의 2(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작성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칙에서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제12조의3)도 별도로 두어, 회의록뿐만 아니라 속기록도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속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8.16)

③ 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예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제12조의 3(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속기록은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간사는 내용상 변경 없는 오·탈자 등에 대한 자구는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회의록 작성 현황

- 아래 <그림 1>처럼 속기록은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모두 기재되고 있음.

<그림1> 2015년 9월 24일 개최한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11쪽 부분¹⁵

○김익중 위원 : 그렇죠. 중·저준위방폐장의 경우도 제도적관리 얘기가 원안법 아래에 기술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 아래에 기술되게 되어 있나요?

○김기태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당연히 원안법 내에서.

○김익중 위원 : 원안법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김기태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제도적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중 위원 :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중·저준위방폐장이 통과는 됐지만 통과될 당시에 '제도적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 저장시설 그다음에 심층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이것들은 제도적관리에 대해서 기술이 어쨌거나 여기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저준위도 제도적관리기간이 고시든지 어디든지 간에 기술되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고준위는 기술되는 걸로 (안)이 나와 있는데, 중·저준위는 기술이 안 되어 있잖아요.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칙 제4조는 회의 방청 절차를 규정하며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15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5.11.12. 최종 검색 <http://bit.ly/1jiouCV>

2.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불법·유해정보 유통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11.9.7.>

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회전까지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7.>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
2.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

- 회의록 작성 규정만 있으며 속기록에 관한 규정은 없음.
-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회의발언내용’을 모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된 후 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회의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개정 2011.9.7.>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1.9.7.>

제9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개정 2011.9.7.>

② 삭제 <2011.9.7.>

③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9.7.>

④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의록 작성 현황

- 실제 회의록에서는 발언을 한 위원이 누구인지를 비롯해 속기록 형태로 발언내용 전부가 기재되어 있음(<그림2> 참고)

<그림2> 2015년 6월 11일 개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년 11차 정기회의 회의록 18쪽 부분¹⁶

○ 박효중 위원장
- 윤훈열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훈열 위원
- 저도 '경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박효중 위원장
- 조영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 저도 '경고'로 하겠습니다.
○ 박효중 위원장
- 저도 '경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고'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널A 'TV주치의 닥터 지.바.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에서 2015.11.09. 최종검색 <http://bit.ly/1NIs4Pn>

4. 개선방안

-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큼.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의 찬반대립이 극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실질적인 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반시민의 회의 방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비취볼 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시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음.
-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안의 경우처럼 규제개혁이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참여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또 회의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한 형태로만 기재하는 방식으로는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심사의 타당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심사결과로 인해 국민 다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움.
-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처럼, 심사 안전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속기록 또한 별도로 작성·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현재처럼 요약하는 형식의 회의록은 정리한 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 받고 공개해야 하는 만큼 빠른 공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속기록 형태는 발언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므로 추가검토가 필요 없어 회의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가능함.

참고1 규제개혁위원회와 주요 정부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회의 운영 현황 비교

1.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비교

〈표7〉 규제개혁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수	· 20명 이상 25명 이하 ·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차지	· 15명 이내	· 9명
임명 절차	·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위촉 · 공무원 위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	· 5명은 국회가 선출 ·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 5명은 대통령이 위촉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 · 상임위원 포함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 · 4명은 국회가 추천
민간위원 자격	·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수직에 있었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사회단체 또는 경제단체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자 · 1급 이상 공무원직을 수행했던 자 ·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

2. 이해충돌방지 규정 비교

〈표8〉 규제개혁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 유무	○	○	○
이해관계 범위	·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경우 ·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 감정, 자문 등에 응한 경우	· 위원 본인,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 있는 경우 · 해당 안건에 관련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기피 · 회피 방법	·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	·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외부인)이 제척사유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가능 ·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	·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제척사유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가능 · 위원 본인의 신청 없어도 위원회 직권으로 결정 가능 ·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
------------------	----------------	--	--

3. 회의 공개 및 회의 방청 규정과 비교

<표9> 규제개혁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공개 및 회의 방청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공개	규정 유무	○	○	○
	공개 여부	○	○	○
회의 방청	규정 유무	×	○	○
	방청 방법	· 방청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	· 신분증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 수령	·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방청신청서 제출

4.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현황과 규정 비교

<표10> 규제개혁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과 현황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유무	×	○	○
	공개 여부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에 공개
	공개 시점	· 정해져 있지 않음 · 통상 차기회의에서 위원회 확인절차 거친 후 공개	·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절차가 끝난 후 공개	·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절차 끝난 후 공개 · 속기록은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회의록 작성	규정 유무	○	○	○
	작성방법 관련기준	X	○	○
	발언자 실명처리	X	○	○
	발언내용 상세기재	X	○	○
	실제 작성현황	· 심사결과, 주요발언을 요약한 형태로 정리 · 발언주체는 익명 처리	· 회의록에 위원들의 회의 발언내용을 적도록 하며, 실제 속기록 수준으로 자세히 기록됨	· 회의록과 속기록 각각 작성 · 속기록은 위원들의 발언이 상세히 기록됨

참고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¹⁷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329호, 2015.5.18., 일부개정]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1.25.]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5.]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25.]

17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제1장 총칙’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부분만 전문 소개함.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1.25.]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삭제 <2006.3.31.>

④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발행일 2015. 11. 16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담당 유동림 간사 02-723-5302 dryou@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